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26호]

2025년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3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 업종/태 제조업
 -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분야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건당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내용
국내 출원	국내 특허	38개사/건	150만원/건	80%	특허청 관납료(우선심사 포함), 변리사(대행) 수입료(VAT 제외)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선행 기술 조사	국내 특허		50만원/건	100%	대리인 수수료(VAT 제외) ※ 수행기관은 기업 자율 선택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합계		38개사/건	-	-	-

※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건 이내(300만원 한도 내)

예)국내출원(특허 2건 또는 특허 1건+실용신안 1건) / 특허 1건+선행기술 1건

02 모집내용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접수시작 : 2025. 4. 23.(수) ~ 사업비 소진 시
 - ※ 11월 28일 접수 마감
- 접수방법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란) : 사업신청서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순서대로 병합하여 '기타서류' 칸 업로드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 정보 또는 불명확 촬영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서식 활용
2	인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필수) / 특허로 발급 가능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 2. 서식 활용
4	확약서	붙임 3. 서식 활용
5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6	사업자등록증(대행업체)	-
7	지출 증빙자료	붙임4.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8	지방세·국세납입증명서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9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등) (5일~10일 소요될 수 있음)
10	'23~'24 재무제표	'24년 재무제표 발급 전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03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출원만 지원 가능
- 출원날짜가 2025년 1월 1일 이후인 당해 연도 출원 건만 지원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건,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만 지원 가능
- 기업당 연간 최대 2건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산정은 건별 지원비율에 따르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기업 자부담

□ 지원제외 사항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였거나 공동출원인 경우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출원 무효, 반려 건, 출원일 1개월 내 포기·취하된 경우
- 성공사례금, 보완 등 중간처리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비용(등록 비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단,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보완요청에 의해 즉시 심사청구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지원내용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소요 비용 한도 내 지원
 - (지재권 출원) 특허청 관납료(우선심사 포함), 대리인(변리사) 수입료(VAT 제외)
 -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대리인(변리사) 수입료(VAT 제외)
- 지원절차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서류 검토 및 최종 지원 금액 산정 후 결과서류 접수순으로 후(後)지급(100%)

※ 지원기업 법인 및 대표자(개인사업자) 계좌 입금

□ 기업 선정방식

- 선정기준 : 접수순 (지원기업 적격여부 확인 완료 기업 中 접수순 선정)
 - 특허 기준 및 내용이 모호한 경우 전문가 심사 후 선정
 - 최종선정 후 지원금 지급(선정 후 2개월 이내) / 최종 선정 개별 연락
- 추가모집 또는 예비 순위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됨
- 선정방식 :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검토 후 최종 선정

구분	항목	기준	결과
1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	적합 / 부적합
2	업종	단순 유통, 도·소매업 제외	적합 / 부적합
3	출원내역	2025. 1. 1. 이후 출원 완료	적합 / 부적합
4	증빙서류	지출증빙, 출원번호 통지서, 견적서 등	적합 / 부적합

※ 1, 2, 3, 4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필요시 최종 선발 기업 현장방문

05 지원금 산정 기준

□ 지원금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 금액에서 제외됨(공급가액 기준)
- 총 소요비용 중 관납료 및 대리인 수수료(부가세 제외) 합산 금액에 대해 지원 비율 적용
- 지원금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한도 내 최대 금액 지원하며, 예산 운영 현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 산정방식

▶ (예시 1) 특허출원

- 신청금액이 187만 5천원인 경우

(단위:원)

신청금액 (공급가액)	지원금(80%)	기업 자부담금(20%)	비고
1,875,000	1,500,000	375,000	최대한도(150만원/건) 지원



(신청내역)

지원분야	내용	금액(원)	비고
특허출원	관납료	1,000,000	특허청 납부 비용
	대리인 수수료	875,000	공급가액 기준/(VAT 제외)
	총 신청비용	1,875,000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공급가액)

▶ (예시 2) 선행기술조사(상표·디자인)

- 신청금액 50만원인 경우

(단위:원)

신청금액 (공급가액)	지원금(100%)	기업 자부담금(0%)	비고
500,000	500,000	-	최대한도(50만원/건) 지원



(신청내역)

지원분야	내용	금액(원)	비고
선행기술조사	대리인 수수료	500,000	공급가액 기준/(VAT 제외)
	총 신청비용	500,000	

0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 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순 및 신청 마감일 접수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서류가 미흡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 선정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비용은 반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명시된 지원대상·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반환할 수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지원사업 중복범위

구분	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국내출원	동일 제품·기술 / 동일 특허	A 기술 특허 출원(타 사업 지원) A 기술 특허 출원(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 제품·기술 / 다른 특허	A 기술 특허 출원(타 사업 지원) B 기술 특허 출원(진흥원 지원)	중복 X
선행기술 조사	동일 제품·기술 / 동일 조사	A 기술 선행기술조사(타 사업 지원) A 기술 선행기술조사(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 제품·기술 / 다른 조사	A 기술 선행기술조사(타 사업 지원) B 기술 선행기술조사(진흥원 지원)	중복 X

※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문의처 :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전화	전자메일
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